

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

차 등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3. 12. 31.] [환경부고시 제2023-269호, 2023. 12. 1., 일부개정]

환경부(자원재활용과), 044-201-7389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 · 포장재를 제조 ·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제출서류)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 · 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, 원료 수불부 등)

2. 제품 ·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(별지 제2호서식) 1부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 할 수 있다.

제4조(감경절차 등)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(이하 "재활용부과금"이라 한다)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.

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연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 대상 제품 · 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.

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.

출고량 × 해당 연도 제품 ·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× 재생원료사용비율*

* 재생원료 사용비율 = 재생원료량 ÷ 출고량

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·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%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.

1.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·포장재 출고량의 5% 비율
2.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·포장재 출고량의 10% 비율

제5조(기타사항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-269호, 2023.12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